



영업비밀보호센터

Trade SEcret Protection center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단계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의 생명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04

영업비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제공을 통해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정착 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 교육

03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분쟁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초동대응 법률자문

05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 위원이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하여 부경법 적용 가능 여부,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02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사내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06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교육, 원본증명 서비스 및 보호관리 시스템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

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법적 대응수단 등을 소개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07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값)만을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소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해 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

• 영업비밀 개념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유지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등을 말합니다.

기술정보

- 시설 및 제품 설계도
- 기계설비 및 장비
- 물질의 배합방법
- 물건의 생산 및 제조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경영정보

-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 경영전략 등 주요계획
- 고객 명부
- 매뉴얼
- 사업 제안서

• 영업비밀 성립요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계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
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공개는 제외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비밀관리성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구분	특허	영업비밀
보호 대상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보호 기간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비밀로 유지 · 관리되는 한 무기한
장 점	독점·배타적인 권리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	기술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보호 가능 경영정보 · 아이디어 등 보호범위가 넓음

※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제도로 관리할 것인지는 당해 기술의 수명, 업계의 수요, 경합기술의 유무, 침해행위의 발견 용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법적 대응 수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금지 및 예방 청구권	폐기 또는 제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금지 또는 예방청구 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청구 가능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기타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법인, 미수, 예비·음모 처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컨설팅 소개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전문가가 제시한 관리방안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보완조치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컨설팅 분야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

영업비밀 관리 규정 정비, 관리조직 운영계획 마련 등 영업비밀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변리사가 컨설팅 수행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출입통제장비·보안솔루션 도입 및 직원 PC 운영실태 점검 등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수립
⇒ 보안 컨설턴트(정보시스템 감리사, ISO 인증 심사원 등)가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절차



※ (2단계) '기업 사전방문' 신청할 경우 센터에서 기업을 방문하여 본 사업 안내, 현황점검표 작성 등 지원

※ (5단계)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 분야로 컨설팅 진행 시 '시스템 담당자 동행방문'을 신청할 경우, 센터 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현장 방문에 동행하여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상담 지원



● 컨설팅 제공 내용

1 부문별 관리 문제점 및 보완사항

Key Initiative	관리수준	현황 및 보완사항
서버 및 디브 보안점검	○ ●	현황 • 영업비밀로 별도 등록하고 있지 않음 • 문서의 표지나 전자문서 등에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음 • 일반문서와 구별하여 보관하지 않음, 시간장치 없음 • 사안에 보관하는 등 보관상태가 불명 • 영업비밀 현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음 • 관리 책임자의 허락없이 알람 사용할 수 없음
외부 접근자 출구선 도입	○ -	
전자기록매체 관리절차	○ ●	보완 사항 • 영업비밀의 등록, 배부, 열람, 복제, 인쇄, 열람, 사인/인출, 보관을 위한 관리현황을 시스템으로 기록 관리 필요 • 영업비밀과 그 기록매체는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된 정보시스템에 보관 • 등록된 영업비밀 문서와 표지나 전자문서 출다 등에 비밀임을 표시 • 영업비밀의 폐기방법을 규정하고 그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함
전자문서 발송제한	○ ○	
백스투드 관리	○ ●	
이석 시 IT기기 보호	● ●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정보통신기기사용 제한	○ -	
로그기록 유지	○ -	

임직원 대상으로 조사한 영업비밀 관리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2 종합등급

총괄표

종합 등급

취약

기술적 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집중적 관리 필요함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현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부문별 취약점 및 종합등급 제시

3 각 부문별 개선방안

인쇄·영역

- 영업비밀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접근통제를 하지 않음
- 영업비밀 전반적 관리현황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음
- 영업비밀 폐기 규정이 없어서 담당자가 임의 처리
- 물리적 관리에서 통제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기술적 관리에서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통제가 없음
- 전자기록매체에 대한 관리절차가 되어 있지 않음

개선사항

- 중요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통제가 되게 하여야 함
- 영업비밀 전반적 관리현황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영업비밀 폐기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개선
- 통제구역 해당 지역을 전부 파악하여 지정하고 관리
- 전자문서 발송 통제를 위해서 DLP 도입으로 개선
- 전자기록매체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DLP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기록매체를 관리하도록 개선

부문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업이 직면한 영업비밀 관리상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4 단계별 이행조치사항

1단계

-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 퇴직자 서약서 징구
- 영업비밀 분류 및 표시 기준 수립

2단계

- 업무별 관리지침 제정
- 비밀정보와 일반정보의 분류 및 표시
- 중요도별 구역 분류 및 지정
- 연1회 임직원 보호의무 고지 및 서약서 징구

3단계

- 분기별 클린데스크 점검
- 반기별 보안 취약점 점검
- 연1회 영업비밀 보호 교육 실시

기업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이행 조치사항 권고

● 후속 보완조치

표준서식 제공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18종) 및 규정(2종) 제공

규정·서식 검토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

(방법) 표준서식과 비교·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보완

시스템 제공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및 이용 매뉴얼 제공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교육 소개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 분쟁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설명회 등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종류

<p>교육기간 1일 (약 1~2시간 소요)</p>	<p>교육기간 1일 (약 10시간)</p>
<p>교육특징 영업비밀 보호 인식 개선 · 제고가 필요한 기업에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가 방문 진행</p>	<p>교육특징 영업비밀 관리인력을 위한 전문 심화교육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p>
<p>교육일정 연중 진행</p>	<p>교육일정 연 1회 예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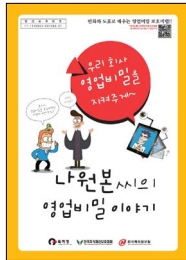
<p>01 방문 교육</p>	<p>02 심화 교육</p>
<p>03 지역 설명회</p>	<p>04 온라인 교육</p>

<p>교육기간 1일 (약 2~3시간 소요)</p>	<p>교육기간 센터 홈페이지 이용 (약 2~3시간 소요)</p>
<p>교육특징 지역지식재산센터 · 각종 협회와 연계하여 전국의 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 실시</p>	<p>교육특징 영업비밀 기초부터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p>
<p>교육일정 연중 진행</p>	<p>교육일정 상시 가능</p>



● 교육 콘텐츠

영업비밀 관리에 유용한 정보와 영업비밀 보호 교육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PDF 파일과 함께 배포·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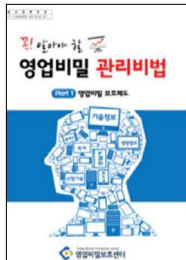
나원본씨의 영업비밀 이야기

만화와 도표로
배우는
영업비밀 보호 비법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침해행위,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등에
관련한 판례정보 수록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관리비법

영업비밀 관리방안 3권을
세트로 구성
1. 영업비밀 보호제도
2. 영업비밀 관리방안
3.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 가이드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
가이드 3권을 세트로 구성
1. 미국편 2. 중국편
3. 일본편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기업에서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 관리
가이드 및 경업금지
약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수록



영업비밀 보호 표준 서식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

* 기타 최신 정보 및 자세한 자료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 시스템 소개

영업비밀 자료 분류·등록, 접근자 권한 설정,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취급 인력 관리, 이력·통계 관리 기능 등을 구현한 영업비밀 자료 관리 시스템입니다.

● 시스템 주요 기능

비밀문서 관리

영업비밀 자료
등록·수정·반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접근권한 관리

이용자별 권한 설정 및
이용그룹 구성, 총괄 관리자 지정

인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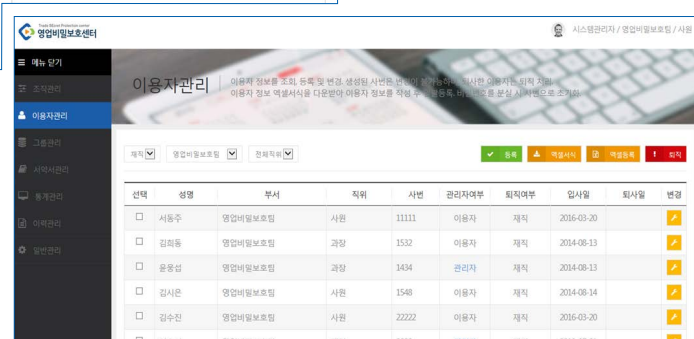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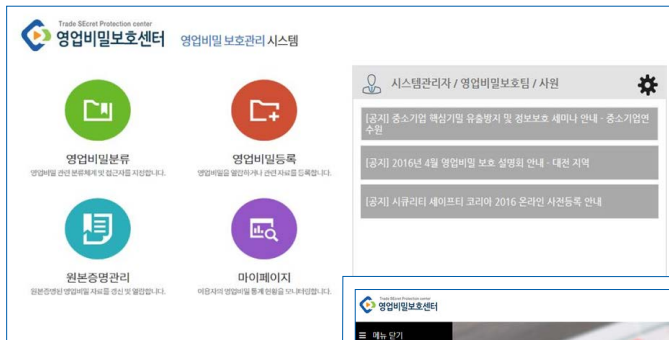
조직 내 이용자 등록,
관리자 여부 지정,
서약서 징구 및 관리

이력·통계 관리

이용자별 영업비밀
자료 취급이력 조회,
등록·열람·수정·반출 관련
통계 확인

마이페이지

자신이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
자료 확인, 동일 접근 권한을
가진 이용자 확인





● 시스템 특징점

비용 절감

서버·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또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없습니다.

비밀관리성 입증

영업비밀 자료 유출 시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제출 용도로 유용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유출심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 시스템 이용 절차



● 시스템 도입 비용

》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지원사업*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 방문교육, 초동대응 법률자문, 원본증명 서비스,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지원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기업은 가입비 1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비 10만원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10만 포인트로 환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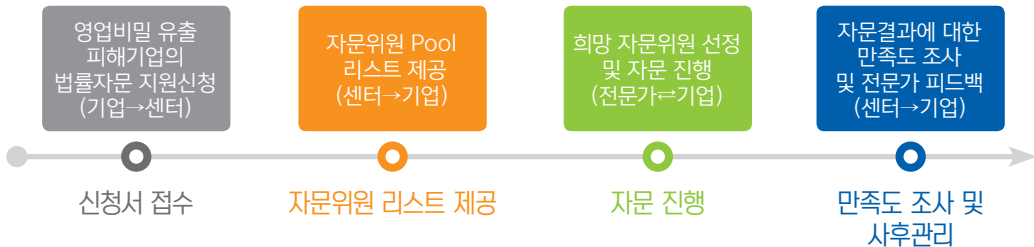
영업비밀 초동대응 법률자문

• 법률자문 소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하여 부경법 적용 가능 여부,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원활한 수사·소송 과정을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진행 절차



• 제한사항

기업 당 1회 무료 지원

※ 기타 상담

• 법률상담

- 영업비밀 개념 및 종류, 영업비밀 관련법규
- 영업비밀 침해유형, 영업비밀 사전보호 방안
- 영업비밀 침해 구제 방안(민사적, 형사적)
- 영업비밀 보호법률 개정(안)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

• 관리상담

- 영업비밀 관리계획, 제도적 관리방안
- 인적 관리 방안, 물리적 관리방안
- 관리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
- 영업비밀 특징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및 보호관리 시스템





● 프로그램 소개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 프로세스 정착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교육, 원본증명 서비스 및 보호관리 시스템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구성

기본 혜택	특별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연 1회)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연 1회) • 사내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시 감수 지원(요청 시) • 영업비밀 관련 법률상담 지원(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가입비 면제 • 원본 증명 서비스 신규등록 비용 면제(10건) • 영업비밀 심화 교육 참가 기회 우선 제공 • 중소기업청 기술지킴서비스 연계(요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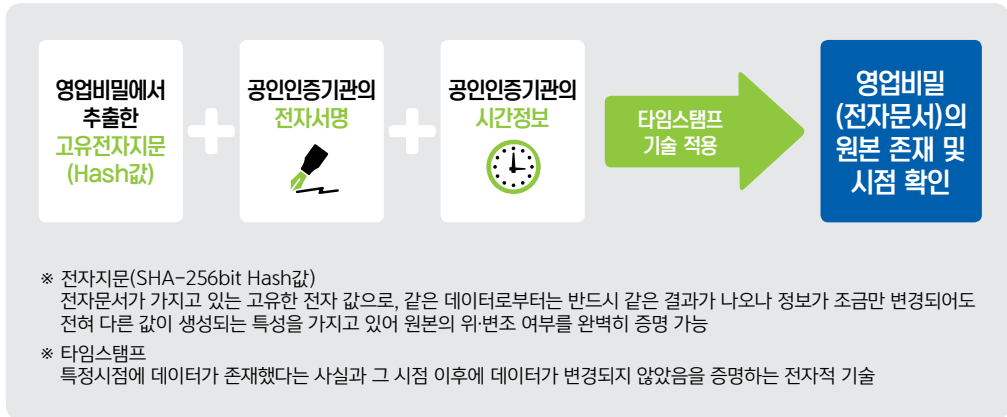
● 프로그램 이용 요금

연 30만원(부가세 포함)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서비스 소개

»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값)만을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소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영업비밀 유출 사전예방, 분쟁 시 영업비밀 보유 입증, 모인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및 선사용 입증[특허법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유용합니다.

내·외부자에 의한 기술탈취 방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탈취 또는 협력업체, 경쟁업체 등에 의한 기술탈취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거래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

하도급 거래, 공동연구, 기술자문, 사업제안, M&A, 기술수출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모인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기술을 탈취하여 모인출원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활용합니다.

공모전 출품시 아이디어 보호

출품작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선사용권 입증

동일기술의 특허등록으로 타사 특허와의 분쟁 시 선사용 입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법적 근거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경법 제 9조의2)

영업비밀 원본증명

-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 식별 값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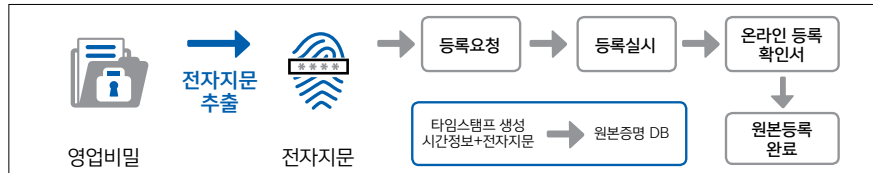
기관의 법적 근거 (부경법 제 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5. 7. 29 시행)

● 서비스 종류

- » **원본등록**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확인을 위하여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합니다.



- » **원본검증** 보관중인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증합니다.



- » **원본증명** 이용자가 보관중인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법원 등 외부기관 제출용 원본 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영업비밀 원본 파일 자체는 전송받지 아니하며, 원본 파일에서 전자지문값과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시간 정보와 함께 보관합니다.
 ※ 영업비밀 원본파일은 서비스 이용자가 보관하며,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서비스 이용방법

PC Agent



원본증명 서비스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홈페이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로
접속하여 이용

서버 Agent



기업 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API로 연계 이용

* 사내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을 희망할
경우 원본증명서비스 API 제공 및 기술지원

* 지원가능 파일

- 한글, MS워드 등 사무용 활용 문서 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을 지원
- 등록 요청 전자문서의 용량은 1.6GB 한도 내 권장
- 여러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원본 등록할 경우 압축된 내부 파일에 대한 증명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 등록 시 유의 요망

• 서비스 이용 요금

원본등록	신규등록	10,000원 / 년
	유지등록	3,000원 / 년
	할증 유지등록	9,000원 / 년
원본검증	온라인 원본검증서 확인	무료
원본증명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30,000원 / 건

* 유지등록은 신규등록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원본증명 효력이 유지됩니다.

* 원본등록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유지등록을 신청한 경우 할증 유지등록 요금이 적용되며, 추가 유지등록 신청기간(6개월) 이후에는 등록 자료가 폐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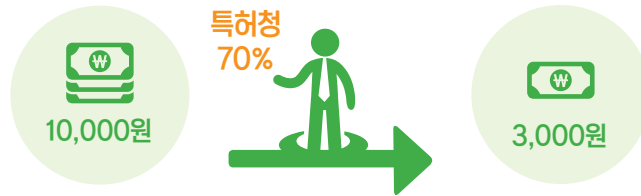
* 이 외 대량이용 계약 시 별도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원본등록 비용지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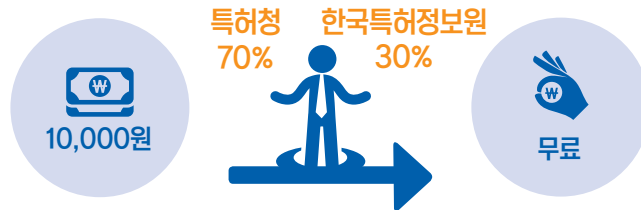
70%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 학생에게 등록료 70%를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30건=21만원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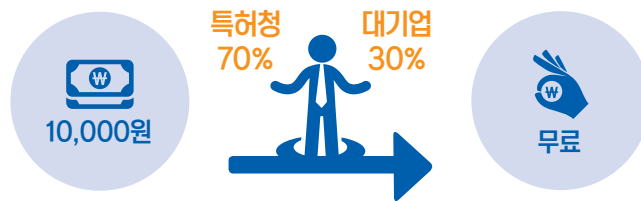
100% 비용 지원

사회적 약자 기업에게 등록료 100%를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30건=30만원 할인)



※ 사회적 약자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등

영업비밀보호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등록료 100%를 지원해드립니다.



※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을 기술보호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원본 등록 건수 =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업 기술보호 지원 건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

-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항목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지원, 공동 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또는 대표번호(1666-0521)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보호 관련 기관 및 지원 서비스 안내

기관명	주요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연락처 및 홈페이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44-8080 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 One-Stop 지원	1666-0521 www.tradesecret.or.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77-0900 www.motie.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 정책	1357 www.smba.go.kr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문 수사 및 예방, 기업지원활동	1566-0112 www.police.go.kr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국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산업보안활동을 수행	111 www.nis.go.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02-3489-7000 www.kaits.or.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 기능 수행	02-368-8787 www.ultari.go.kr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 방지정책 수립 운영	044-200-4010 www.ftc.go.kr
무역위원회	불공정한 무역거래행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지원	044-203-5837 www.ktc.go.kr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	02-368-8400 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 및 입증 서비스 운영	02-368-8484 www.kescrow.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단	인터넷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체계 운영	118 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지원	02-550-9500 www.opa.or.kr



Q1.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 하나요?

특허의 보호객체는 인간의 기술적 사상이며 공개를 전제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특허권을 부여 받습니다. 반면 영업비밀의 객체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포함하며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로 관리하는 한 계속적으로 보호받지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로 관리할 것인지는 당해 기술의 수명, 업계의 수요, 경쟁기술의 유무, 침해행위의 발견 용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Q2. 아이디어도 영업비밀에 해당 하나요?

영업비밀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모든 경영상 유용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경영정보의 예로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터 (실패한 실험데이터 포함), 제조기술, 연구레포트, 거래선 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정보는 경쟁기업이 당해 정보를 취득·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 (즉, 단순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고객명부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이 필요하고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값만을 활용하며 원본의 실체는 오직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소유하게 되어 영업비밀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Q4.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증명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의 원본존재, 보유시점 및 보유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Q5.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전자지문(Hash값) 해킹 시 원본유출 가능성이 있나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보관하므로 원본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전자지문 추출을 위해 SHA-256의 Hash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전자지문을 통해 원본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 분실 시 증명이 불가하므로 이용자께서는 원본을 따로 보유·관리하여야 합니다.

Q6. 원본등록한 자료를 업데이트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영업비밀인 경우 원본 등록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시고 자료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자료의 증명을 위해 버전별 원본등록 또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원본등록 등을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7. 법률상담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적 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 수단 등 영업비밀의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부터 영업비밀 민간 자문단을 통한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소송비용 견적까지 초동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s the prevalent framework for appropriability regime.

원본증명 서비스



영업비밀 원본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해 드립니다.

상담 및 교육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보호관리 시스템 제공



기업내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